

종업원 발명자가 경쟁사로 이직한 경우 사용자에게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을 상실한
다는 사내 규정 - 효력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7가합570123 판결



1. 사용자 회사의 직무발명 규정

발명자가 경쟁사로 이동 또는 해고로 퇴직 시 보상금 청구권을 상실한다.

2. 쟁점

종업원 직무발명자가 사용자 회사의 경쟁사로 이직한 다음 전직 회사에 대해 직무발명보
상금을 청구한 경우 재직 기간 중 시행한 위와 같은 사규 -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근
거로 전직한 종업원 발명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단 - 사용자의 규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법 규정은 직무발명의 귀속자인 발명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보장함은 물론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

정

으로 봄이 상당하고, 발명의 승계에 의해 발생하는 보상금 청구권은 종업원이 그 회사를 퇴직한 경우에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회사의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은 발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전직하는 경우 이미 발생한 정당한 보상금 청구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심히 제약할 뿐 아니라 그러한 청구권 박탈의 요건으로 들고 있는 '경쟁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 등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이공계 변호사/변리사, 발명자 중심 보상청구소송, 다양한 사건, 소송비용경감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